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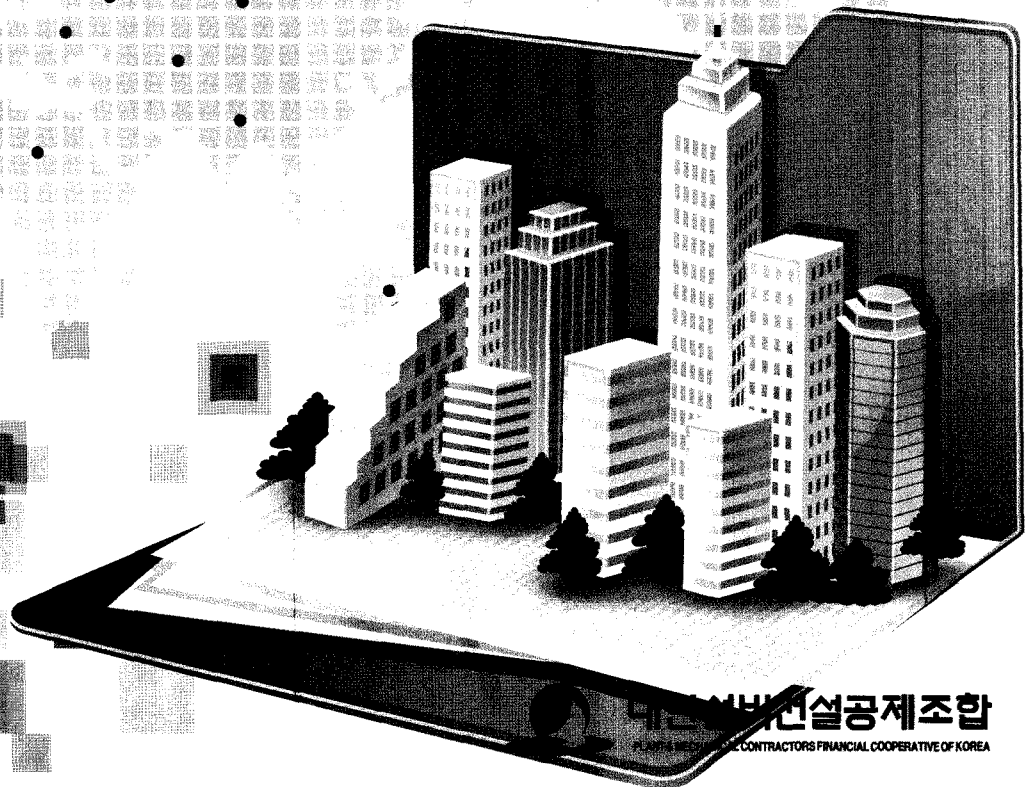


w w w . s e o l b i . c o m

사이버보증시장의 리더

디지털 건설환경의 뉴프론티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설비건설인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조합업무안내
조합업무 Q&A
조합칼럼
재테크
성공그것은...
설비건설인 씬터



보증기간 종료前, 보증서 문자메세지 사전발송 서비스 개시

■ 목적

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대해, 보증기간 종료 전에 문자메시지를 사전에 발송하여 조합원사가 보증해제 및 보증한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업무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 대상보증 : 입찰·하자보증을 제외한 전 보증(보증금액 1천만원 이상)

■ 발송시기 : 보증기간 종료일 15일 전

(매일 발송, 영업일이 아닌 일자의 해당 자료는 전 영업일에 미리 발송)

■ 서비스 시작일 : 2011. 8. 11(목)


■ 수신자 관리 방법

• 수신거부 시

- 대표이사를 수신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문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점에 연락하여 수신거부 의사를 전달하거나,

- 조합 홈페이지에 직접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 (SMS 수신자 등록)에서 수신 거부를 등록

• 수신자 추가 등록

- 조합 홈페이지에 수신 담당자를 추가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이사장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를 중심으로...

1.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고객지향 모바일 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 및 업무처리 결과를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모바일서비스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모바일서비스는 조합과 관련한 각종 업무안내, 처리결과, 상담내용 등 개별처리 과정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자 등록을 하시면 수시로 지점·영업소에 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처리여부를 조회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정보를 휴대폰으로 즉시 제공받을 수 있는 고객맞춤형서비스입니다.

2010년 1월 11일부터 조합과 관련한 각종 업무 거래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수신자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 시행

조합원들의 보험료 절감을 위하여 근로자재해공제사업과 더불어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재해공제사업은 조합원사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은 조합원사가 본의 아니게 공사 중 제3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대신 보상해 주는 공제상품으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근로자재해 공제사업	영업배상책임 공제사업
보상대상	조합원사의 소속 근로자	공사와 무관한 제3자
보상하는 손해	업무수행 중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 손해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한 제3자의 대인 또는 대물 손해
가입방법	공사장별 또는 연간 공사 일체	공사장별 또는 연간 공사 일체
최고보상 금액	1인당 : 5억원 1사고당 : 10억원	대인보상 : 1인당 · 1사고당 30억원 대물보상 : 1사고당 10억원
공제로 산출기초	인건비	공사금액

조합원들께서는 기계설비, 가스설비, 소방설비를 비롯한 모든 공사에 대하여 위 공제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보험사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10% 수준의 보험료가 절감되오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라며, 공제상품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거래 지점(영업소) 또는 본부(업무부 02-6240-1032, 1036)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 보증한도 증액

조합원의 출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증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다수 이용하는 일반보증 한도를 아래와 같이 신용등급별로 구분하여 최대 2배 까지 보증한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급·기타보증 한도 및 가산배수 등을 일반보증에 전용하여 사용할 경우 최대 21배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별 보증한도 증액내용 및 총 보증한도

신용등급	보증한도 증액 및 총 보증한도
AAA등급	출자지분액의 2배증액 (9배⇒11배)
AA~A등급	출자지분액의 1배 증액 (AA등급 8배⇒9배, A등급 7⇒8배)
BBB~B등급	출자지분액의 0.5배 증액 (BBB등급 6배⇒6.5배, BB등급 5.5배⇒6배, B등급 5배⇒5.5배)
CCC~C등급	C그룹은 보증위험 등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 (CCC등급 4배, CC등급 3배, C등급 3배)

4. 소액보증제도 개선(수수료 인하)

가. 배경

CCC등급 이하 등 소액공사를 주로 도급받는 조합원에게는 소액보증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금융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조합원이 일반보증한도 부족으로 인한 출자부담을 완화하고자 건당100만원 이하인 계약보증 및 하자보수보증 발급시 입찰보증한도 중 4배 범위 내에서 소액보증한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04.4.1부터 소액보증제도가 운영되었으나, 수수료가 높아 보증 활용도가 낮음에 따라 33% 내지 50%를 대폭 인하하여 시행함

나. 보증대상

계약보증 · 하자보수보증 중 소액보증(건당 보증금액 100만원 이하)

다. 보증수수료 요율

- 계약보증 요율 : 년 1.2% ⇒ 년 0.8%
- 하자보수보증 요율 : 년 0.9% ⇒ 년 0.6%
- 최저수수료 : 건당 12,000원 ⇒ 건당 6,000원

5. 저가공사보증심사 제도 개선

가. 시행 배경

- 업계의 건전한 공사수주 관행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제도화 한 저가공사 보증심사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나. 저가공사 심사기준

1) 심사대상 보증

- 계약보증 : 계약금액 건당 30억원 이상 공사 중 고액보증심사 대상공사 제외
- 선급금보증 : 계약금액 건당 30억원 이상 공사

2) 심사대상 확대

- 종합공사업체가 도급(원·하도급 모두 포함)한 건당 30억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중 1의 해당되는 경우
 - 대한설비건설협회 본회 및 시·도회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가로 신고

또는 제보 등을 한 경우

- 입찰참여자가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저가로 신고 또는 제보 등을 한 경우
-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수주한 공사로서 저가소지가 있는 경우(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 심사 개시)

6. 선급금공동관리제도 도입

가. 공동관리 대상금액

1) 신용등급별 기준금액

- 신용등급별 기준금액

신용등급별	AAA ~ A	BBB ~ B	CCC ~ C
기준금액	5억원	3억원	2억원

2) 신용등급별 공동관리 비율

- 공동관리 비율(신용등급별)

수령비율	선급금	AAA ~ A	BBB ~ B	CCC ~ C
10%초과 ~ 30%미만		20%	30%	40%
30%이상 ~ 40%미만		25%	35%	45%
40%이상 ~ 50%미만		30%	40%	50%
50%이상 ~ 60%미만		35%	45%	55%
60%이상		40%	50%	60%

계약금액이 50억원인 경우 선급금 공동관리 예시

단위 : 백만원

선급금수령비율	선급금액 (수령비율)	공동관리금액		
		AAA ~ A	BBB ~ B	CCC ~ C
10%초과 ~ 30%미만	1,000 (20%)	200 (20%)	300 (30%)	400 (40%)
30%이상 ~ 40%미만	1,500 (30%)	375 (25%)	525 (35%)	675 (45%)
40%이상 ~ 50%미만	2,000 (40%)	600 (30%)	800 (40%)	1,000 (50%)
50%이상 ~ 60%미만	2,500 (50%)	875 (35%)	1,125 (45%)	1,375 (55%)
60%이상	3,000 (60%)	1,200 (40%)	1,500 (50%)	1,800 (60%)



나. 공동관리 담보의 종류(시행일 : 2011.2.10)

당 초	개 선
가. 현금, 예·적금, 부동산 등	가. 담보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담보
나. 당해 공사의 선급금으로 수령한 어음	나. 좌동
다. 선급금을 전자외상매출채권으로 수령한 경우 당해 매출채권을 발행한 건설업체가 기성대가 등으로 지급한 진성어음 · 조합의 할인가능 대상어음에 해당되는 경우	다. 조합 할인대상 대상어음(융자업무규칙 제6조내지 제8조 참조) <담보제공이 제한되는 어음> · 건설자재대금의 전도를 위하여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타 공사의 선급금으로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 · 만기일이 담보제공일부 터 180일을 초과한 어음

7. 해외 공사의 원화보증서 발급

가. 배경

해외공사 등 외화로 계약된 공사에 대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금액을 달러 등 외화로 표기된 보증서를 요구함에 따라 조합원들은 금융기관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조합의 원화보증서 발급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나. 보증대상 :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수보증, 선급금보증에 적용

다. 개선내용

- 보증채권자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서상의 외화보증금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30%범위 내에서 가산한 금액을 보증
- 당해 보증서 발급시 연대보증인의 보증서 발급동의서 징구
- 외화보증금액을 표기한 한글보증서를 요구할 경우 보증금액 란에 [일금 000원(외화금액표기)]를 명기하여 발급가능
- 보증서의 '특기사항'란에는 보증사고의 배상방

법을 명기하여 발급

'조합의 보증책임은 원화보증금액을 한도로 주계약상에 약정된외화보증금액(외화금액표기) 범위내에서 산정한 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주계약 등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 외화로 계약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외화금액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원화보증서 발급절차를 적용하여 발급

8. 계약이행확인원 징구제도 폐지

- 계약일부 터 30일경과한 후 계약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계약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증채권자가 발행한 계약이행확인원을 징구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였으나, 동 징구제도 폐지하였습니다.
- 계약이 불이행된 공사에 대하여는 보증서 발급불가

9. 납세증명 징구제도

가. 배경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보증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심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국제납세증명서 징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나. 시행일 : 2010. 9. 20

다. 대상

신용등급 A등급 이하 조합원으로서 건당 보증금액 2억원 이상인 계약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AAA~AA등급은 부실이 예상되어 지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구할 수 있다.

10. 지급·기타보증 가산배수 조정

가. 조정 배경

- 보증배수는 보증위험이 적은 상위 신용등급에 많이 배분하고, 보증위험이 높은 하위 신용등급에 낮게 배분하는 등 조합원의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배분하여야 하는 것이나

- 가산배수를 일반보증과 지급·기타보증에 안분하는 경우 안분된 지급·기타보증의 가산배수 중 CCC등급 이하의 상위등급보다 많이 배분되어 보증위험이 감소되지 않음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나. 개선 내용

- 지급·기타보증에 안분된 CCC등급 이하 가산배수를 신용등급에 따라 조정
 - B등급 이상 조합원은 현행대로 적용
 - 감소되는 CCC등급 이하 지급·기타보증의 가산배수는 일반보증에 이용

신용 등급	가산배수 안분			가산배수 안분		
	계	일반 보증	지급· 기타	계	일반 보증	지급· 기타
AAA	5	3.46	1.54	현행과 동일		
AA	5	3.48	1.52			
A	5	3.5	1.50			
BBB	5	3.53	1.47			
BB	5	3.67	1.33			
B	5	3.85	1.15			
CCC	5	<u>3.64</u>	<u>1.36</u>	5	<u>3.9</u>	<u>1.1</u>
CC	5	<u>3.33</u>	<u>1.67</u>	5	<u>3.9</u>	<u>1.1</u>
C	5	<u>3.75</u>	<u>1.25</u>	5	<u>4</u>	<u>1</u>

다. 유의사항

- 2010. 7. 1이전에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그 약정은 2011. 8. 31 까지 유효하나 2011. 9. 1부터는 약정을 갱신하여야 업무거래 가능
- 2011. 8월에는 지점별로 관할 조합원의 약정내용을 확인한 후 2010. 7. 1 이후 약정을 갱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합원에게 약정 갱신을 통지하여야 함
 - CCC등급 이하 및 용자일부 상환에 의한 가산배수를 약정한 조합원 해당(붙임1 참조)

11. 담보약속어음 등의 징구 및 생략

가. 현행 제도

- 담보어음 징구대상 보증 : 선급금보증,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자재구입보증, 리스보증

- 담보 종류 : 은행도입람출급약속어음, 공정중 서부약속어음
- 담보 약속어음 등 징구면제 대상
 - 보증규칙 제7조에 의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담보보증)
 - 담보약속어음 등 징구대상 보증종류중 신용등급별 면제대상으로 정한 일정금액이하의 보증

나. 개선된 제도

- 담보종류 추가 : 당좌수표
 - 당좌수표의 발행일자를 백지로 징구함과 아울러 보충권 위임장도 징구
 - 발행일자는 은행에 지급제시할 때 보충(보증사고 등 사후관리 목적을 제외하고는 담보용으로 징구한 것이므로 은행에 지급제시 불가)
- 담보 약속어음 등 징구면제 대상 확대(제29조의 2 참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적용대상 법인
 - 보증·용자 등 기존채무를 포함하여 출자지분액 범위 내 거래하는 경우

12. 증권거래세 처리절차 개선

- ※ 증권거래세의 부담 주체 변경
 - 지분반환 : 조합 부담
 - 보증지급금 또는 용자금 상계 및 경매·공매를 통하여 낙찰받은 출자증권의 지분반환 등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 : 당해 조합원 부담
- ※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양도금액5/1000은 관할세무서에 조합원이 자진 납부하여야 함. 



조합업무 Q&A

조합업무 Q & A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 집니다.
조합업무 전반에 관한 궁금한사항이 있으신 조합원께서는 홈페이지(www.seolbi.com)
Q & A 게시판과 이메일(webmaster@seolbi.com)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

최초 약정시만 조합직원 입회 하에 공동 대표자가 직접 기명날인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을 할 수는 없는지?

A

최근 판례는 연대보증인의 보증의사를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공동대표의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약정을 체결하고 나서 보증금을 지급한 후 구상단계에서 보증의사를 부인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조합에게 있는바, 조합이 보증의사를 입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 구상금 청구소송시 연대보증인이 자기 인감증명의 도용을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를 주장할 경우 조합으로서는 입증불가

대표자가 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기명날인이 어려울 경우 전자약정을 이용하여 약정체결(범용공인인증서 이용)을 할 수도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점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기계설비공사사업연허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A

[기계설비공사사업,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건설업등록]

가. 등록기준

- 자본금 : 최소 2억원
- 기술자 : 기계설비공사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3인 이상

- 시설, 장비
- 보증가능금액확인서(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발급)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절차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 신용평가 신청 → 신용평가(등급산정) → 예치금액 산출 → 예치서 제출 및 현금예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나. 등록절차

신청인이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관청에 접수 → 등록관청(서류검토 및 실사)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다. 등록신청서 교부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및 협회에서 교부

라. 등록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등록신청서 제출처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민원실
- 신청수수료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수입증지 부착(업종당 20,000원)
※ 모든 첨부서류는 등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서 신청 시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제출

① 건설업 등록신청서

-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 기명 날인
- 2개 업종 이상 등록할 경우 신청서 1부에 신청업종 기재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등록번호 기재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개인) 사본

조합업무

Q & A

- 상호, 본점소재지, 자본금, 대표이사 등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적색으로 표시
 - 합자회사의 경우 출자금 합산금액을 등기부 여백에 적색으로 표시
- ③ 대표자 및 임원명단
- 대표자 및 임원은 신원조회 대상이므로 주민등록번호, 한자성명, 본적지 및 주소, 호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기재
 - 주식·유한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 제외)
 - 합명·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감사 제외)
 - 개인: 대표자
 - ※ 신원증명서는 등록권자가 조회하므로 별도 제출하지 않음
- ④ 신청회사 재무상태 증명
- 법인업체
 - 기존법인: 기업진단보고서
 - 신설법인: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개시대차대조표(세무대리인 확인 필)
 - 개인업체
 - 영업용자산액명세서
 - ※ 기업진단보고서는 공인회계사에게 발급 받고, 개시대차대조표 및 영업용자산액명세서는 세무사에게도 발급 가능
- ⑤ 건설기술자보유현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 재직증빙서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자격취득확인통지서 1통)
- ⑥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의 20%~50%의 범위 내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하게 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제출서류
- ① 보증가능금액확인신청서
 - ② 예치서
 - ③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는 제외)
 -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 ※ 위의 5가지 서류를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제출하여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시·군·구청에 제출
- ⑦ 시설 및 장비 증빙서류
- 사무실 보유 증빙서류
 - 자기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
 -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이 표기된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 ※ 건물소유자가 건물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임을 확인되는 경우(재산세 납세증명서 확인 등에 한하여 건물등기부등본을 대신하여 건축물대장을 제출할 수 있음)
 - 사무실 위치도
 - 사업장 약도를 찾기 쉽도록 구성
 - 장비 보유 증빙서류



- 건설공사용 장비보유 현황표
- 장비등록원부등본(장비별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장비별 사진 각 2매(전면, 후면)

마. 등록수첩 및 등록증 수령

- 교부 기관 : 관할 등록기관(시·군·구청) 담당부서
- ☞ 등록증 수령시 준비사항
 - ① 수령자의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② 면허세 납부 : 18,000원 (종업원 30인 이하)
 - ③ 주택채권매입 : 400,000원(자본금의 2/1,000)
 - 금융기관에서 매입후 매입필증 제출
 - ※ 등록 시 구비서류는 등록관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등록권자에게 문의 후 접수 및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한설비건설협회 및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가입절차

-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후
 - 협회 : 회원가입 신청서, 입회비, 기본회비 납부
 - 조합 : 가입원 제출, 예치금액을 출자금으로 전환
 - ※ 조합 가입 후 보증업무는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신규조합원이 조합에 예치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는 용자대상에서 제외됨



조합에서 발급한 계약보증건에 대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한다고 하는데 공제조합에서 시공상황을 조사할 법적근거나 이유가 있나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시공상황조사는 조합의 기본법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제64조(시공상황조사 등) 제1항 “공제조합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보증한 공사현장에 출입하여 시공상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조합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시공상황의 조사 등)제1항 “공제조합은 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공사의 감리자 또는 보증채권자에게 시공방법, 공정 및 자재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제조합에서 시공상황 조사를 하는 목적은 발급한 계약보증서의 공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 ① 보증채권자에 대하여는 보증기관으로서의 보증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며,
- ② 우리조합원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원도급자인 일반건설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한다거나, 추가공사 발생으로 추가시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부당한 하도급행위에 대한 자료를 징구하여 차후 분쟁이 있을 경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원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잘 이해해주시고 조합의 시공상황 조사 요청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력의 중요성

-기획조정실 이정섭 주임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부모님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적을 내서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이가 좋은 학교를 가서 어떤 일을 하며 살게 하고 싶은지’를 되묻곤 했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떤 일’에 대한 기준을 설명하곤 했는데, 대부분의 그 ‘어떤 일’은 의사, 판·검사 등 소위 말하는 ‘사’자의 직업이었다. 아무리 변호사, 의사가 많다고 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전문직 직업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아직도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이다.

어쨌든 그러한 대답을 하실 때마다, 나의 대답은 똑같았는데 ‘공부도 중요하지만 방학기간에는 무조건 책을 읽히라’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이 말은 비단 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언어영역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이유는 간단한데, 흔히 ‘사’자가 되기 위한 시험에는 모두 ‘언어’라는 과목이 생겨났고 모두 1교시에 치러져 체감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이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되기 위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MEET, DEET, KEET의 ‘언어추론’ / 판·검사,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LEET의 ‘언어이해’ / 5급공무원, 외교관이 되기 위해 치러야 하는 행정·외무고시(PSAT)의 ‘언어논리’ / 약사가 되기 위한 약학전문대학원 시험인 PEET의 ‘언어추론’ 등이 그러하다.

이렇듯, 전문직 시험에 ‘언어’라는 과목을 신설하고, 중요도를 높인 것은 과거 대학학부 전공만으로 Specialist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

각에서 이제는 대학에서 Generalist를 만들고 그 이후 Specialist를 만드는 교육철학으로 바뀌었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 그리고 Specialist의 기본 자격을 독해력과 사고력 그리고 논리력에 기반 했다는 점에 ‘언어’과목을 신설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라는 시험이 과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은 2011년 8월 21일 로스쿨 입학시험의 ‘언어이해’ 과목의 한 문제를 발췌한 것이다.

... 중략 ...

19세기 분석법학의 연구 성과는 이들 규범 양상들이 서로 일정한 의미론적 관계 및 논리적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명령은 소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적극적 허용을 함축하며, 금지는 적극적 허용의 부정이지만 소극적 허용을 함축한다. 소극적 허용은 금지를 함축하지는 않으며, 적극적 허용은 명령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또한 소극적 허용과 적극적 허용은 서로 배제하거나 함축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 네 가지 규범 양상은 행위 지도의 모든 경우를 포괄한다.

... 중략 ...

문제)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② 어떤 행위가 금지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 ③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금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어떤 행위가 명령의 대상이 된다면 절대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어떤 행위가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고 해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극적 허용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극적 허용의 대상이 된다.

정답 : ④

위 문제에서 알 수 있듯이, 로스쿨 입학시험이라고 해서 법학적 지식을 묻지는 않는다. 과학, 철학, 사회, 문학 지문 등이 골고루 출제되며, 로스쿨뿐 아니라, 행정외무고시, 의사, 약사 시험이 모두 그렇다. 즉, 각 학문의 단편적 지식을 암기해서 쏟아 내는 능력을 평가했던 것이 과거

의 시험 형태였다면, 지금은 새로운 글이나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 시간에, 논리적으로 해결하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능력을 쌓기 위해서는 꾸준한 독서와 논리력 배양이 필수적이다. 좋은 책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사고하고, 책의 내용과 반영된 현실에 대하여 정당성이나 적절성 등을 평가하고, 비판적 글 읽기를 통해서 분석, 추론을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어려서부터 길러야 한다.

좋은 학교를 갔다고 소위 말하는 '사'자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물론, 좋은 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보다 더 많은 공부와 독서량으로 논리적 시험에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확률은 높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여, 사고, 논리, 응용 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앞으로 이러한 시험은 더욱 확대될 예정이며, 곧 7급 공무원시험도 이러한 형태로 바뀐다고 한다. 이제 독서는 단순히 일반적 지적능력 향상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과정으로 변하고 있다. 인문철학 도서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듯이, 독해와 사고는 이제 사회적 요구이며, 필수이자 의무인 듯싶다. 🐼